

1. 医療事故被害者の自殺에 대해 賠償責任이 있는 것인가.

〈設問〉 医療事故로 노동능력을 절반쯤 잃은 建設労働者が 悲觀自殺을 했다하여 그 유족들은 그 병원에 대해 자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습니다.

과연 그 병원은 배상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答〉 의료사고로 노동능력이 절반가량 상실했다면 의료기관측에 故意나 過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損害賠償 책임이 있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나쁜 결과가 피해자의 잘못도 합쳐서 발생되었다면 그만큼 過失相計를 하여 배상액이 減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려면 어떠한 잘못을 저질른 그 잘못된 일과 발생된 결과와의 사이에 因果關係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란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나쁜결과(이 사건의 경우라면 傷害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을 준 사람은 덜어놓고 그 발생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생활의 經驗에 비추어 「相當性」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 「相當性」이 있다고 볼 것이냐는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로 大法院이 하는 일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의료사고가 있는 후에 그 환자가 비관자살을 하였다면 그 自殺과 事故사이에 과연 상당성이 있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살펴야 할 것 입니다.

제시된 設問만 가지고는 바로 그러한 「相當因果關係」가 있는 것인가를 가리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겠지만 1972. 4. 20. 大法院의 判例를 보면 크게 참고가 될 것 입니다.

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原告는 1970. 6. 29. 鑛山の 鑛夫로 일하다가 광산사고로 광갱이 무너져 부상을 당했습니다. 専門醫의 감정결과로는 腰部擦過, 左膝關節部打撲傷 및 脱臼 등으로 앞으로 광부로서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日傭노동 자로서의 노동력은 약 40%가량 잃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후 그 광부는 심한 생활고와 사고후의 후유증때문에 고통을 이기지 못한 채 1971. 4. 12. 비관자살을 하였으니 被告는 그 사람이 살아 있었다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전액을 배상하라고 청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鑛山会社인 被告측은 비록 그 광부가 자살을 하였다고 해도 그 광산사고와 그 자살과의 사이에는 相當因果關係가 없다고 주장하고 그 자살에는 여러가지로 복잡한 원인이 있었을 것이며 이 사건으로 인한 부상은 여러가지 원인중의 한가지의 조건이 되었는지는 모르되 일반적으로 鑛山事故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자살을 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며 더구나 사고발생 1년이 경과한 후에 또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아래에서 우리의 經驗則에 비추어 납득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大法院은 「이 사건의 중상과 고통, 비관과의 사이나, 고통, 비관과 자살의 사이에는 서로 相當因果關係가 있다」고 판결하여 결국 그 자살에 대한 손해까지도 모두 배상하라는 것 입니다.

設問의 경우 더 규명해 봐야 할 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되었을 것이므로 이에 따라 해답이 나올것으로 믿습니다.

2. 損害賠償의 合意는 항상 有效한 것인가

〈設問〉 交通事故로 中學校3年生이 頸部捻

坐의 상해를 입어 약5일간의 안정가료를 필요로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고직후 병원에 입원했었으나 별로 痛症도 없고 의사도 별이상이 없으니 退院하라고 권하기에 5만원의 치료비용을 받고 그 車主와 피해자의 法定代理人인 부모사이에 원만히 合意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일후부터 목이 아프기 시작하여 도저히 견딜수 없어 病院에 진찰결과 앞으로 6개월간의 治療를 받아야 고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車主측은 이미 合意가 끝났으니 치료비를 물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答〕 원래「合意」란 용어는 아주 근래에 쓰기 시작한 것 입니다. 刑事法廷에서 보면 심지어 強盜殺人사건에서도 피해자와 合意를 보았느냐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잘 쓰여지는 표현인데 결국 분쟁 당사자사이에 원만히 和解가 되어 그 분쟁이 당사자사이에 해결이 되었다는 뜻일것 입니다. 그래서 그 合意書에는 의례히 「갑」은 「을」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을」은 후일 「갑」에게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며 형사상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加害者본인이나 그 고용주와 被害者사이에 合意書가 작성되면 그 후에는 그 피해자는 다시 그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5일간 안정가료를 필요로 한다하여 그렇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합해서 5만원정도 받아도 만족스럽다는 생각에서 合意를 하였는데 뜻밖에도 그 후유증으로 무려 6개월간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하니 문제는 심각해 집니다. 원래 法律에는 「契約自由의 原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당사자가 강요를 당하였거나 속았거나 그 밖에 세상물정에 현저하게 어두워서 아무것도 모르고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한 그 계약당사자의 처분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資本主義가 고도로 발달하고 소득이 증대되어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게 된 까닭도 바로 이 「契約自由의 原則」

의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학생의 法定代理人들이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손쉽게 合意를 보았다면 그 不利益은 그 잘못판단한 쪽에게 돌아 가야 마땅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合意」라는 계약당시 그 계약당사자는 과연 어떤생각으로 그 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意思를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일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유증이 생길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해 본 일이 없이 그저 5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라고 하니까 그러한 정도라면 5만원을 받고 합의를 해도 무방하리라고 피차가 확신을 하고 그 계약을 하였다고 보아야 옳은 일 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1977. 4. 12. 大法院은 「합의당일은 사고 직후라 부상의 전모가 의학상으로 뚜렷이 제대로 나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인정되어 그때현재로 原告는 물론 被告도 重한 결과가 되리라는 사정은 알 수 없었다고 아니 할 수 없어 그 합의에서 예상한 정도의 부상은 重한 것이 아니라는 당사자간의 意思이었다고 할 것이니 그후에 처음 예상한 것 이상으로 重한 사태가 일어 났다면 그 합의를 들어 이 손해의 배상을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担当・朴承緒(辯護士・朴承緒法律事務所)
서울特別市中區太平路二街340番地：752-5165

医療保險制度가 實施된 以來 病院에 있어서의 医療紛爭은 알게 모르게 增加하고 있어 病院의 어려움이 더욱 加重되고 있다.

본회는 이러한 병원에 있어서의 医療紛爭을 解決하고 法律的인 救助를 위해 顧問辯護士制度를 新設하여 法律相談欄을 마련하였으니 많이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